안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 - 12호

## 『2025 토탈마케팅 지원』 사업 공고문

안양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 안양시 대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.

> 2025년 2월 20일 안양산업진흥원 원

# ▮ 사업개요

1. 공고기간 : 2025. 02. 20. ~ 03. 07(금)

2. 접수기간: 2025. 03. 10(월) ~ 03. 14.(금) 18시

3. 지원대상 : 안양시 소재 중소 벤처기업

4. 지원분야 : 업종 제한 없음(단순 유통, 숙박 등의 업종은 지원불가)

5. 지원내용 : 마케팅 자금 지원

6.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20,000천원(기업매칭 10%, 부가세 10%)

7. 기업부담금 : 지원금액의 10% 이상 매칭비 및 부가세 자부담 必

#### ▶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출예시

(단위 : 천원)

구분	지원금 (진흥원)	기업부담금		소요비용	
		매칭비	부가세	포파미요	
선정기업	20,000천원	2,000천원	2,000천원	24,000천원	

※ 매칭비 : 진흥원 지원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(현금만 인정)

### Ⅱ 신청자격

- 1. 신청자격
  - 가. 공고일 현재 안양시 소재 중소 벤처기업

구 분	세 부 내 용		
중소•벤처기업	·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	
소재지	· 공고일 현재 안양시 사업자등록 기업		
업 종	· 업종 제한 없음(단순 유통, 숙박 등 제외)		
매출규모	· 제무제표 최근 3년 평균 200억 초과 기업은 신청 불가 · 상장사, 중견기업은 신청 불가		

### 다. 제외 대상

- 단순 유통, 숙박 등의 업종은 지원 제외
-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서/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(기업)
- 기타 법령에 제한사유 발생 및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(기업)
- 기업지원사업 중복 수혜 인정 및 관리방안 개정(안)에 해당하는 자(기업))

### Ⅲ 선정절차 및 방법

- 1. 평가방법 : 서류 및 발표 평가
- 2. 평가일정(안)



- 3. 위원구성 :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
- 4. 지원금 조정 : 사업비 심사 후 지원금 확정
  - ※ 지원금이 조정된 경우 사업비 운용 변경 계획서 수정 제출
- 5. 평가기준 :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

구 분	방 법	기 준	총 점
서면 평가	∘시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 검토 등 -계획서, 시업비 운용계획서, 확약서등	○기업현황(30) / 재무현황, 기반역량 등   ○기술성 및 시업성(70)   - 보유기술, 시장분, 목표 및 내용, 매출증가 및 실용화 가능성 등	100
대면 평가	∘사업계획 및 진행 PT(발표)	• 서면평가 합격자 공고후 명시예정	100
기점 부여	최대 10점 가점 항목 : 붙임참조		10

6. 결과발표 : 합격자 개별 공지

## Ⅳ 주의사항

- 1. 집행방법
- 가. [진흥원] → [선정기업] 계좌이체
- 나. 지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은 별도로 체결 및 안내
- 다. 별도의 토탈마케팅 자금 관리 계좌(사업비 전용통장) 개설
- 3. 기업부담
- 가. 진흥원 지원금액의 10% 이상은 기업 자부담 必
- 나. 기업부담금은 현금만 인정되며 현물 불가
- 다.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되며 <u>부가세는 지원기업이 부담</u>
- 4. 보증방법
- 가. <u>협약체결시 매칭비 및 부가세 금액 전용계좌 입금후 이행(지급)보증보험</u> 증권 제출
- 나.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은 지원금에 대한 보증액으로 제출
- 다. 협약기간 : 협약일 ~ 2025. 11. 21.
- 라. <u>사업지원금 사용기한 : 협약일 ~ 2025. 11. 14.</u>
- 마. 이행(선금급)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: 협약일 ~ 2026. 03. 31.`
- 5. 주의 및 유의사항
- O 협약기간 동안 진흥원과 사전 협의된 내용만 인정

- 사업기간 內 사업장 이전(관외)시 사업비 전액 환수
- O 명시된 증빙서류외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 必- 미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가능
- O 외부 회계 감사 후 부당사용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환수
- 전용통장 입출금 내역과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 편철후 제출
- O 기타 확인 불가능한 외국 업체 및 개인 등을 통한 지출증빙은 불인정
- 모든 증빙은 사업기간 內 진행된 지출증빙 서류 등만을 인정
- 사업기간전 사용한 금액 이월 불가
- O 기타 확인 불가능한 외국 업체 및 개인 등을 통한 지출증빙은 불인정
- 모든 증빙은 사업기간 內 진행된 지출증빙 서류 등만을 인정
- O 수기 영수증, 거래내역서 불인정
- 사업자가 없는 개인 간(프리랜서) 거래 금지
- O 외화 송금 불인정
- 그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 및 내규에 따름.
- O <u>토탈마케팅 지원 사업비 운영지침 참조</u>
  - 6. 인정범위

### 가.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용된 금액 ~ 11월 14일까지 사용예정 금액

- 나. 인건비, 장비구입비 등의 항목 지원 불가
- 다. 협약기간 동안 진흥원과 사전 협의 된 계약내용만 인정(임의변경 불가)
- 라. 사업추진관련 선정기업의 재료, 장비, 기술 등에 대한 내부비용 계상 불가
- 마.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운용계획서 검토 후 최종 사업비 산정 및 지급
- ※ 기타사항은「항목별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」참조
- 7. 관리방법
- 가. 별도의 사업비 관리 계좌 및 카드로 타 사업의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
- 나.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 외에는 불가
- 다.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 간 거래 불가(사업비 계좌에서 현금인출 불가)
- 라. 매칭비 및 부가세는 협약체결 시 전용계좌로 미리 입금하여 집행금액에 포함
- 마. 전용통장 입출금내역과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는 일치되게 편철 관리

- 8. 정산방법
- 가.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
- 다. 시업지원금 사용기한(2025.11.14)까지 자금을 집행하고, 7일 이내(2025.11.21.)에 사업지원금 정산결과를 진흥원에 보고
- 라. <u>정산자료는 진흥원의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(자금정산 회계법인 위탁)</u> 결과,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 반납

### Ⅴ 신청 관련 문의

- 1. 제출방법 : 담당자 E-mail 제출 jcw0801@aba.or.kr
  - 전송 오류방지를 위해 전송시 담당자 확인
  - ※ 제출시 관련서류 순번대로 압축 必(붙임1,붙임2,붙임3)등 순서

나 담당자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2층 기업육성부 조창우 부장

- 2. 제출서류: 담당자 E-mail 제출
- 1. 붙임2\_신청서식 內(서식(제1호) ~ 서식(제10호)
- 2. 2023, 2024년 재무재표
- ※ 2024년 재무재표의 경우 결산상황(종료)에 따라 안나올시 2023년 과세표준증명원 으로 대처 제출
- 3.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4. 시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5. 청년기업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(뒷 주민번호 매직등으로 삭제 후 제출)
- 6. 기점서류 : 붙임 기점 항목 참조
- ※. 관련문의 : 기업육성부 조창우 부장 / 031)8045-6714, jcw0801@aba.or.kr